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 분쟁의 조정 · 중재 방향

이 효 성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21일 청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 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효성 충북중재부 중재위원이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 분쟁의 조정 · 중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황성주 중재부장(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도입 및 문제제기

여론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그동안 언론 관련 법제도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다행히 지난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를 넘어 인터넷 포털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돼 왔다. 중앙은 물론 지역 언론사들까지도 경쟁적으로 포털사

이트와 제휴하면서 뉴스 공급채널이 양적으로 확대돼 왔는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에 의한 보도보다 포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인터넷 포털 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비등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5년에 이어 2009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있었던 점은 시의적절 했다고 보여 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있을 언론 조정·중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인터넷과 언론중재법

1) 2005년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

지난 2005년 7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이 법률들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비판신문의 정부 감시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난과 함께, ‘언론피해로부터 일반인을 구제하기보다 언론자유에 피해를 줄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박선영, 2008). 하지만 이 법률들은 인터넷 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피해구제의 길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즉, 인터넷 언론은 또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은 물론 의무를 부여했다.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도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명문화했다. 인터넷언론사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인터넷 언론의 선거 관련 토론회나 광고도 허용의 길이 열렸다. 또 인터넷신문이 등록 대상이 됨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공식적인 인터넷 언론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신문법은 다른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 등록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했다. 즉,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문법은 부칙(제3조)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뒤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한마디로 2005년 시행된 신문법은 인터넷 언론으로 하여금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의무와 책무 등 강제 사항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키게 됐다. 다시 말해 지난 2005년 7월 28일 이후 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인터넷 신문에 한정되긴 했지만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도 기존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 행사 등 언론중재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중재법 시행이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언론중재법의 도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요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당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동적인 소 제기 △언론중재위 통한 손해배상 신청 가능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 가능 등의 조항이 규정됐다.

<표>인터넷 신문 조정 및 중재신청 현황(2005년 이후)

기 간	조 정 신 청	중 재 신 청
2009년 1~3월 현재	25	6
2008년 1~12월	157	3
2007년 1~12월	113	0
2006년 1~12월	77	0
2005년 1~12월	48	0

출 처: www.pac.or.kr

특히 2005년 당시 중재법이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킨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언론 중재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언론매체에 의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현상을 법정 밖(out of court)에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7년 명예훼손법 개정안(Uniform Defamation Act)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의 도입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표성수, 1997; 이재진 2006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우는 비록 법정에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사회광고가 특별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이재진, 2006).

2) 2009년의 개정 언론중재법

하지만 지난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반론권 등 이용자 측의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중재법이 내포하고 있던 언론 자유의 침해 요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은 물론,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포털, 언론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기존 법제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속에서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신문법 및 중재법과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이 있었다. 지난 2006년 헌법

재판소(헌재 2006.6.29.2005헌마165)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 확인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구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추가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 간 보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에 의한 수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해당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이라는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닷컴 사이트 게재물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새로운 매체가 진화를 거듭함에 따라 언론관련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기존 매체 이용자를 능가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함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인격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중재의 적용대상에 해당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행위를 추가한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정 언론중재법은 적용매체의 확대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중재결정의 취소, △정정보도청구의 소, △시정권고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정남철, 2009).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이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정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조정·중재 과정에 있어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중재결정의 취소-개정 중재법은 또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및 중재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결정취소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 이었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또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와 관련해서, 개정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언론자유 위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 상의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간이 소명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토록 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언론으로서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청구에 비해 정정보도 청구가 갖는 의미의 비중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중재법이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했다는 점은 특히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시정권고-시정권고와 관련, 개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의 법익침해사함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을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해 삭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언론자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제도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3. 포털 분쟁의 조정 · 중재 방향

1)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한편 최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 상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2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정남철, 2008). 지난 2004년 1,816건이었던 건수는 2005년 2,353건, 2006년 2,304건, 2007년 2,343건이었으며 2008년에는 2,553건에 달했다. 상담신청의 피해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내용의 유형으로는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손해배상 23.4%, 기타 15.3%, 추후보도청구 2.0%, 금지청구 1.4% 순이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지난 1981년 12월 31일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수단이라는 비난 속에서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지난 1987년 11월 28일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물법)과 '방송법'에 흡수되어 존속되었다. 그 후 정간물법이나 방송법에 산재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통합하고 단일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었다(정남철, 2009). 독재정권 하에서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민주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언론분쟁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개인으로서는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이들의 명예훼손적 언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언론 사이의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라고 평가할 만하다(정남철, 2009).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중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정’의 의미를 가졌다(이시윤, 2004). 그러나 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는 조정과 실질적 의미의 중재로 구분된다(한위수, 2006). 특히 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에는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정남철, 2008).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중재는 조정에 비해 객관적이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재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PACnews, 2009년 3월호 참고).

한편 오는 8월 7일 시행예정인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포털 등으로 인한 피해도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정·중재제도가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청구건수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 중재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재위원회나 위원들은 신속한 조정·중재 진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매체의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방안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나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매체는 물론 잠재적 피해구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개인 역시 이에 대한 진지한 인식

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조정·중재 시 고려사항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가장 큰 쟁점은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명확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전통 매체와는 그 게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문의 내용, 크기, 횟수, 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사건 중 조정 성립된 사례를 보면 반론(정정)보도문 보도(게재) 형식은 기존 신문·방송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진(2008)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조정 신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게재 시간문제-이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보도 횟수와 보도문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게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 간 조정 성립된 30건 중 절반이 넘는 17건이 13~24시간이었다. 이외 24시간, 48시간, 72시간 초과 등도 있었다.

△게재 위치-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에 저장된 원기사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하도록 조건을 추가로 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론권 부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이 18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12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글자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기와 아울러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경우 동일 화면이라 하더라도 글자 크기가 다르고, 고딕체나 또는 명조체나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글자 크기와 함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반론보도문의 내용 못지않게 자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자수가 반론문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원문 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사 삭제 요청-기존 매체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

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이재진·구본권, 2008).

△기타 사항-이러한 견해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반론권 청구 자격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정도 문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반론권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 및 효과의 문제 등이다.

3) 결론 및 논의

새롭게 등장한 매체와 이로 인한 분쟁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이다(이재진, 2008). 특히 가장 표현 촉진적이고 참여적인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 구제와 같은 반대되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익형량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 간 해결의 당사자가 명확하였으나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이재진, 2008). 정보 제공자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기존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 그 책임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묻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즉 정보제공자가 생산, 유통, 전파한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가 출현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정보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매체와 같이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지,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포털의 경우 정보생산자와 정보제공자(배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 해결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분쟁 해결 시 기존의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사닷컴에 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아 졌다.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하여 기존의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개정 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즉 포털 측만을 상대로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가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 조회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는 기사제공 언론사에게도 기사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이지만, 이를 조정절차에 그대로 준용하여 언론사를 피신청인, 즉 포털과 동일하게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PAC News, 2009.3).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기존 매체에서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시의성 있게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조정·중재 과정에서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조정·중재 처리 기간도 빠른 속성을 지닌 인터넷에 걸맞게 단축해야 할 것이며, 중재위원들의 인터넷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이 있

어야 할 것이다(이재진, 2008).

언론중재법에 포털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된 사실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또한 포털을 단순히 '뉴스 유통사'로 볼 수 없게 됐으며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과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 등이 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단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웠던 포털이 이제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전통 언론매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 매체에서는 언론의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해 수용자 자신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해도 접근 수단이 매우 제한돼있었지만 포털 등 인터넷 체계 내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개인 본인이나 타인을 통해 어느 정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 포털뉴스 서비스 분쟁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중재법 시행에 즈음해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진실성을 갖추는 등 기존의 행태와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사로부터 전달받아 게재하게 될 뉴스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게재 기사가 명백하게 사실에서 벗어난 경우 개정 중재법의 법리에 따르면 포털도 정정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기사를 게재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사의 자체 생산 여부가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진실성 결핍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기사를 생산해 제공하는 언론사와의 기존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PAC News, 2009.3.). 한동안 포털사이트 측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을 변경해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논란이 돼, 최근에는 이 같은 '편집행위'를 최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돼 포털 측의 책임이 요구되면, 포털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야 할지도 모르게 됐다. 즉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에 대해 포털 자체에서도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신문들의 오보로 인한 분쟁과 피해 사례가 적지 않

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포털은 이제 기사를 단순히 매개한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포털도 진지한 고민이 불가피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국 규모의 신문은 물론 지역신문들이 먼저 객관적이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생산된 정보나 뉴스를 포털 측에 제공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이제 신문법 체계인 언론중재법에 조정·중재의 대상이 된 만큼 언론성을 가진 매체로서 갖는 지위와 영향성을 확보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진실성에 대해서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이제 그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토 론

사 회 황 성 주
충북중재부 중재부장

황성주(사회자, 중재부장) : 주제발표를 해주신 이효성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하신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명(충북넷 대표) :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터넷 포털 등이 조정중재대상이 된 것이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자칫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뉴스는 기존 매체와 달리 유통자체가 2차 뉴스 생산이기 때문에 그 뉴스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뉴스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만이 존재하였지만 인터넷에 등재된 기사는 댓글이나 네티즌들의 의견이 개진되면서 새로운 가치나 사회적 함의를 포함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언론자유를 보호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기사 게시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충청매일 편집국장) :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붓물 터지듯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재부는 인터넷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인

터넷 포털 뉴스가 신문사 기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불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중재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개정된 언론중재법은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언론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나오신 분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기존의 인쇄 신문사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사의 기사가 포털에 게재되면 피해자들은 신문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신문사는 기존의 방식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면 됩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제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제한 신문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청구하게 되면 연합뉴스를 먼저 심리를 하게 됩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먼저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신문도 처리하게 됩니다. 포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신문사는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6개월 보관 의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소관 부처도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청주청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

과거 모교에서 어떤 교수가 데모를 하여 그 교수를 제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지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려져 마치 본인이 폭력배인 것처럼 묘사 되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용석(중재위원) : 인터넷 게시물인 언론사의 기사이면 언론중재법으로, 그렇지 않고 블로그 기사나 개인이 온라인으로 게시한 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3조에 따르면, 임시조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그것을 30일간 임시적으로 블라인딩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분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분쟁조정부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문기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문기사가 불만이 있다고 할 때도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법리적 취지와 임시조치가 가능한 법률적 취지가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다행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보도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각하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피해는 기사에 의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에 의해 피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의 언론중재법은 기사만을 상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댓글에 의한 피해는 별도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최근 포털의 게시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포털을 언론으로 보았으며, 포털이 편집행위를 하였다 하여 언론성을 인정하였고, 댓글의 명예훼손적 글을 방치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며 그에 따라 손해배

상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는 기사와 댓글에 의해 발생하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은 기사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절반밖에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속도가 굉장히 빠르는데 조정중재처리 절차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비해 늦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일련의 시간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중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피해구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사 스크랩과 관련하여 조정신청 대상인가 아닌가의 문제, 스크랩과 관련하여 임시조치를 많이 요청하였는데 포털입장에서는 개인 블로그가 기사를 퍼간 것이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이슈들이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다보니 이번 개정법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도 개정법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털 입장에서는 그 동안 규제의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정 기사의 전파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상당히 모호했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절차적 명료성도 확보되었고 이용자 관점에서는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책무비용, 즉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들이 사실보도, 균형보도에 대한 책임성들이 높아지는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성주 :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학계의 의견을 들

어보겠습니다.

김찬식(청주대 광고홍보학과장) : 검증되지 않는 메시지가 확산될 경우 피해는 뛰어가는데 구제는 기어가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박종호(전 중재위원) : 인터넷 자체를 모르는 기성세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은 없는지 즉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안내를 할 수는 없는지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위원회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대중화 즉 우리 이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길(충청일보 논설주간) : 중재위원회에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재위원은 분쟁 해결의 담당자입니다. 중재위원은 실무적이거나 이론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조정대상이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론과 실무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초중고에서 위원회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대식(법무법인 주성 사무장)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자유입니다. 포털 매체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게시자는 자기 책임 하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개체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

게 되면 언론의 자유는 저하되고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기 책임 하에 게시하게 되므로 게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개체인 포털에게 게시물 책임을 지우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 벌칙조항을 보면,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합의하고도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위기사로 기업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피해액은 수천, 수억에 이르는데 과태료가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주 : 박종호 전 위원께서 위원회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의 실정상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사무처 내에는 교육이나 상담 요구 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구제를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는 중립적인 기구이므로 조심스럽습니다만 피해 상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현재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교재에 우리 위원회와 언론피해구제에 대해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하여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 : 인터넷 피해에 대해 사전에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국가권력이 많은 부분에 개입하는 것이 정

당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위원장께서 정리해주셨습니다.

권 성(위원장):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발제자,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사회자,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털에 대해 언론조정중재 대상으로 할 것인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털을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이런 저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시절에 입법되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언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의 역사를 볼 때, 언론의 자유는 우선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전적 의미의 언론자유인 출발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이라고 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라

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언론의 자유에 새로운 측면의 책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 국가권력과 관계가 아니고 대 시민 관계, 대 일반 국민 관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이 또 하나의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속성을 띠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언론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하나는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수단 또 하나는 일반시민에 대한 가해적 측면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후자의 입장, 즉 일반시민에 대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시절에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생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이런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오해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몇 차례 해외시찰을 나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은 공공적인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중재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론기관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규제할 수 없는 공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의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대한 소송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무런 비용 없이 손쉽게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인터넷 세상이 되었음에도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 모두를 중재위원회에서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황용석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밖의 국가기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중에 극히 일부 당사자가 신청을 해왔을 때 구제의 손길을 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분쟁의 실체에 접근해서 아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중재위원들이 인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재위원회가 직접 중재위원의 인선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추천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홍보문제입니다. 홍보는 많은 돈을 들여서 텔레비전,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홍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과 관련시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재위원회의 교육방향은 주로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중심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뒤로는 교육의 대상을 잠재적인 언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피해구제제도를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피해구제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혹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쌍방이 도움이 되는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분쟁을 부추긴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는 포털문제입니다. 이 분야는 미개척분야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미리미리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사무처에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분쟁을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털 분쟁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이의제기하지 않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책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분쟁해결방법, 정정으로 할 것이냐 반론으로 할 것이냐 손해배상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은 중재위원들이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 분쟁이야말로 중재에 적합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털분쟁에 관해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아주 열띤 분위기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